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. 7. 22 선고 2021가합10014 판결 [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1. 5. 27.

판 결 선 고 2021. 7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74,22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,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,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.)

재판장 판사 류연중, 판사 황경환, 판사 김수민

별지